



첫만남이용권

'22.1.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
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
지급대상

'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
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
신청자

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
보호자 아동의 친권자·양육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
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

보호자의 대리인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, 사회복지시설장이
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

신청방법

방 문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지급시기 '22.4.1일부터

※ '22.1.~3. 출생하는 1.3일부터 사전신청 가능

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
※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급

사용기간

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
사용처

유흥업소, 마사지 등 위생업종(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사행업종,
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

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

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("국민행복카드")

지원금액 인상(60만원~100만원) 신청일 기준, '22.1.1.~

영아수당

2022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



지원대상

만0~1세 아동('22년생부터)

지원내용

가정양육시 현금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, 종일제
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지원
중 택1

* 현금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
동시지원 불가(서비스 간 변경 가능)

양육방식별 신청서비스명

가정양육	어린이집이용	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이용
영아수당(현금)	보육료	종일제아이돌봄

지원금액

영아수당(현금)	보육료	종일제아이돌봄
30만원	이용권(바우처) 지원	이용권(바우처)지원

*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요
→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신규발급 불필요

지원시기

0~23개월/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

ex)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
보육료서비스 신청 필요

신청방법

방 문 |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온라인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* 온라인 신청은 '22.1.5일부터 신청 가능

문의사항

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

아동수당

*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

Q 아동수당이란?

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Q 지원연령은 몇 살로 확대되었나요?

기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것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('22.1월~)되었습니다.

Q '22.1월 기준으로는 만8세 미만인데, 종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'22.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('14.2.1이후 출생아)은 '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
시스템 구축, 정보 현행화등을 위해 '22.4월에 지급 합니다.
'22.4월에 '22.1~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('14.2.1.~'15.3.31. 출생아동)

Q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.

※ 다만,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정보 현행화 필요
('22.1~2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)

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
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

첫만남이용권

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

영아수당

아동수당